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12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김동아 · 김용민 · 김의겸
서영교 · 박지원 · 김한규
김남희 · 이성윤 · 박균택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의 법원사무 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을 각각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한다.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다음 각 호의 근무 경력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 경력에 합산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u>검찰청</u> 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u>검찰청</u> 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 8. (생략) ② (생략)	제2조(업무) ① ----- ----- -----. 1. ----- <u>공소청</u> (<u>광역공소청</u> , <u>지방공소청</u> 및 <u>지방공소청 지청</u>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 <u>공소청</u> ----- -----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u>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u>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 <u>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u> ----- ----- ----- ----- -----. ② ----- ----- ----- ----- -----.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
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
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
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
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
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③ (생략)

제23조(사무원) ① ~ ⑤ (생략)

⑥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
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
게 제2항의 전과(前科)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
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전과

1.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2.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사무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지방공소청장-----

--.

⑦ -----
----지방공소청장-----

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
----------------------------------	-----------------